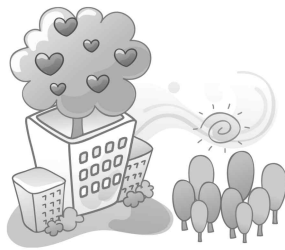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총괄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보건 복지부	재활연구개발용역 사업(R&D)	보건의료(재활 분야)	재활관련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0~24	41	2	9월	861
보건 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889	미정	-	866
보건 복지부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225	미정		875
보건 복지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205	미정	-	882
보건 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797	미정	-	889
보건 복지부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108	120 (복지부)	미정	-	898
보건 복지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60	110	미정	3월	904
보건 복지부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190	미정	-	911
보건 복지부	글로벌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120	미정	5월	918
보건 복지부	100세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초연구, 개발연구	12~36	10	237	-	925
보건 복지부	임상연구인프라 조성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366	미정	-	933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 R&D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36	20	미정	2월	940
보건 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 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12~86	91	219	1월	946
보건 복지부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응용연구, 개발연구	0~60 (프로그램 별 특성에 따름)	147	113	1월	953
보건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 (R&D)	보건의료	기업, 대학, 연구소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응용연구, 개발연구	1~3년	40	1~3억원	5월	960
소계	15개 사업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성민 연구관

(전화 : 02-901-1933, E-mail : universalism@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재활분야)
(2) 연구수행주체	재활관련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타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2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억원이내

1. 사업개요

사업목표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체적 기능 회복과 정신적 지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제품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임상적 적용 및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참여 및 보급 등을 통하여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기본방향

- 재활보조기술, 운동인지기능재활, 재활표준정책 등 효과적이고 다원적인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연구개발, 임상적용, 정책반영 등의 순환적인 연계 연구를 통해 향후 재활 R&D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2. 지원대상분야

- 장애인 보조기구, 재활치료, 재활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역량이 있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
- 지원 분야는 재활보조기술 분야(재활보조기구 개발 등), 운동인지기능재활분야(임상재활연구 등), 재활표준정책 분야(재활의료서비스 등)로 구성됨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소속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소속의 기업부설연구소
- 「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본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과제 중 용역연구·개발연구과제의 주관기관이 학교인 경우 세부연구기관으로 실용화 및 제품화가 가능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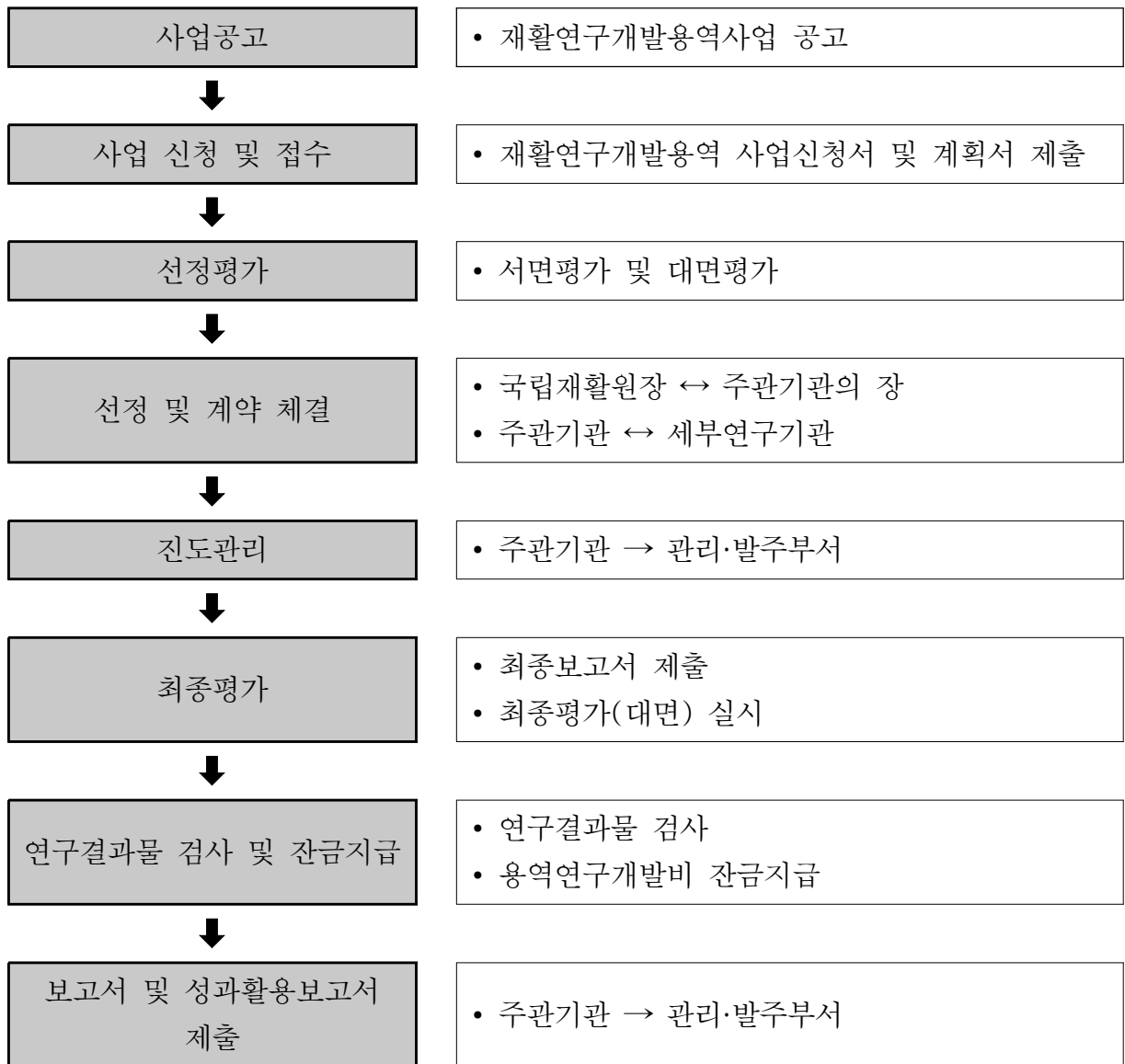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 단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최대 2년
- 연구개발과제 당 연간 2억 원 이내(2년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6. 추진일정

월	추진내용
2013.09	▪ 사업공고
2013.10	▪ 선정평가
2013.11	▪ 선정발표
2014.01	▪ 계약 및 연구실시
2014.06	▪ 중간평가
2014.11	▪ 최종평가
2014.12	▪ 연구종료(검수 및 잔금지급)

7.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및 첨부
사립대학교, 법인 등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2부
		한글파일(hwp)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이행(입찰) 보증보험 증권	입찰금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 입찰일시는 해당공고 참조
국립대학교, 국공립연구기 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2부
		한글파일(hwp)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관련자료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홈페이지(<http://ri.nrc.go.kr/R&D>)의 관련 자료참조.

〈문의처〉

- 문의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임성민 연구관
(Tel : 02-901-1933, E-mail : universalism@korea.kr)
허가영 연구원
(Tel : 02-901-1951, E-mail : ga_young@korea.kr)
황현기 연구원
(Tel : 02-901-1971, E-mail : hhk0810@korea.kr)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이선규 사무관

(전화 : 02-2023-8978, E-mail : byuly74@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88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 사업목적 : 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인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건강을 증진시키고 사람이 살기 편안한 건강·안전 사회 구현

2. 지원대상분야

중개연구

- 창의적 중개연구

- 질병중심 중개연구 :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념, 지식, 기술을 관련 질병이나 손상의 진단·치료 및 예방기술 향상 등 임상적응으로 빠르게 연계하기 위한 연구 (bench↔bedside)
 -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 병원이 특화분야의 진단·치료·기술 역량을 확보하여 기술사업화 및 브랜드 제고가 가능하도록 R&D 지원
 - 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 : 병원에 결집된 특성화 연구역량을 활용, 기초·실용화 연계를 위한 산·학·연·병 공동 연구 지원
- 문제해결형 중개연구
-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 치과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에 필요한 창의적인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뇌의학연구(치매) : 혁신 기술을 이용한 치매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치매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뇌의학연구(정신질환) : 우울증, 정신분열병, ADHD, 자폐증 등 성인 및 소아 주요 정신질환 극복 연구
 -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 임상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미래선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핵심 분야 집중 지원
- 임상의과학 연구역량 강화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 보건의료 분야의 유망한 신진 의과학자를 선발, 장기 맞춤형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 의과학자로 육성
 - 한미 보건의료 인력교류지원(K-VSTA) : 선진국의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경험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제7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후속조치)
 -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 : 기초연구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수한 중개연구, 임상연구 인력 양성

□ 공공보건기술개발

- 질병예방기술 : 질병부담연구, 질병원인탐색연구, 질병예측연구, 질병중재효과 분석연구
-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 희귀질환 연구기반 확충, 진단·치료기술의 선진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저출산대응 의료기술 개발 : 불임·난임 극복 및 고위험 출산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 기후·환경변화질환 대응기술 : 천식·아토피 등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질환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중개연구

- 창의적 중개연구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
기반연구		> 중건의과학자 단독지원 • 최근 3년 SCI(E)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이상 게재한 연구자	세부과제 구성 불가 연간 8천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중점연구	순방향	> 기초과학자와 임상의학자들로 세부구성 • 주관연구책임자: 기초과학자 또는 임상의학자 중 1인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협력연구 (다학제 구성 필수)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역방향	> 기초과학자와 임상의학자들로 세부구성 • 주관연구책임자: 임상의학자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 병원의 특성화 분야를 중점 육성 • 질병의 예방·진단·치료기술개발 능력향상 및 제품개발 • 주관연구기관: 의료법 제3조의3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문제해결형 중개연구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
치과의료융합 기술개발	> 치과질환 치료 효율 향상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치과분야의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주관연구기관: 치과분야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산·학·연	연간 4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뇌의학연구 (치매)	> 치매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 한-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 연구, K-ADNI 등 • 주관연구기관: 대학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뇌의학연구 (정신질환)	> 5대 정신질환 관련 분야 연구 지원 • 정신질환 조기진단 및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기술확보 • 주관연구기관: 대학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간 4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임상현장발굴 과제융합연구	> 의료서비스 제공의 최끝단인 임상현장에서 발굴되는 미해결의료수요의 산·학·연 융합연구를 통해 연구개발 제품화 성공률 제고와 성과의 수용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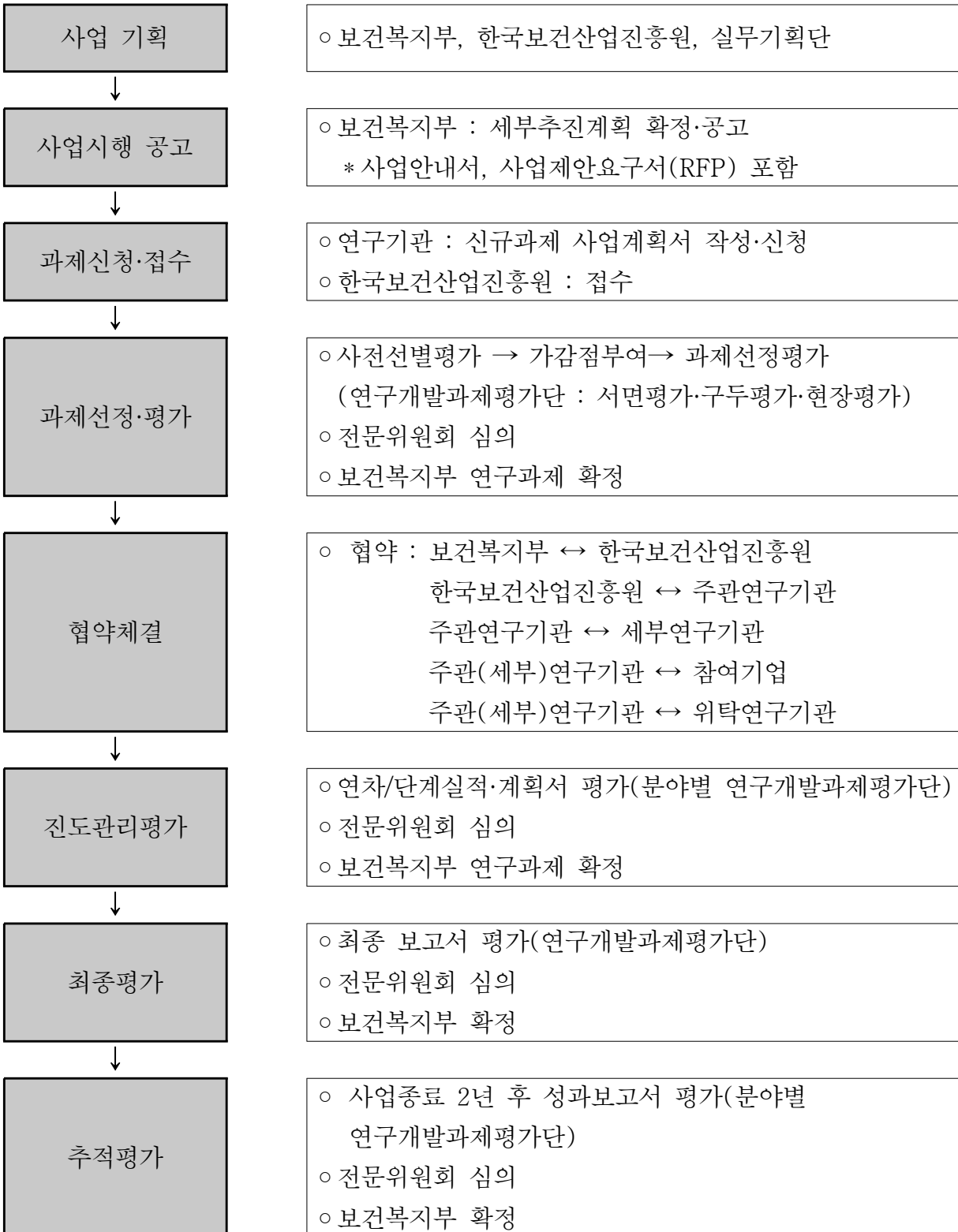
○ 임상의과학 연구역량 강화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
Medi-star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 창의적이고 젊은 의생명과학자 발굴·지원 • 주관연구자: 멘토가 참여하는 M.D/Ph.D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VSTA	>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양성 지원 • 美 NIH 또는 CDC에 파견하여 선진연구기술습득 및 협력 • 주관연구자: 박사 후 과정 및 교수급 연구자	연간 6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	> 생명과학 및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융합적 교육을 바탕으로 임상 적용 실천이 가능한 중개 연구 분야의 인재 양성	

□ 공공보건기술개발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기간 및 규모
희귀질환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개연구센터 지원 • 연구협력제고를 위해 주관연구기관 외 기관의 참여 필수 • 주관연구기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가능 	연간 6.4억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저출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불임 극복 기술개발을 위한 중점연구 • 가임력 보존 N/W 구축센터, 난임·불임 극복 기술개발 중점연구 등 • 주관연구기관: 대학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간 2~8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기후변화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변화 질환 대응연구 및 알레르기질환 연구 • 주관연구기관: 대학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간 6~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질병예방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부담연구, 질병원인탐색연구, 질병예측연구, 질병중재효과분석연구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개월)
↓	
접수	(2개월)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Tel : 02-2023-8978, E-mail : byuly7@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 이슬기
(Tel : 043-713-8882, E-mail : sklee@khidi.or.kr)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이선규 사무관

(전화 : 02-2023-8978, E-mail : byuly74@korea.k)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2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 개요

- 사업목표 :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병원 중심의 의료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전방위 산업간 연계강화를 목표로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병원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 사업목적 : 기초연구성과의 첫 임상적용("First in human" trial) 촉진을 위해 병원과 산학연간 협력연구 촉진, 병원이 메디클러스터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기존 병원을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메디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지원으로, 중개연구 및 관련 인프라를 집중 지원
- 정부의 산발된 연구개발 지원의 총체적 연계를 통해 병원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의 R&D 역량 결집
- 병원의 R&D 역량을 향상시켜 의료 R&D 분야의 우수 인력이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 클러스터 내부에서 임상연구자와 기초연구자 간 활발한 교류가 일어남으로써 기초연구성과물의 제품화 가능성을 높임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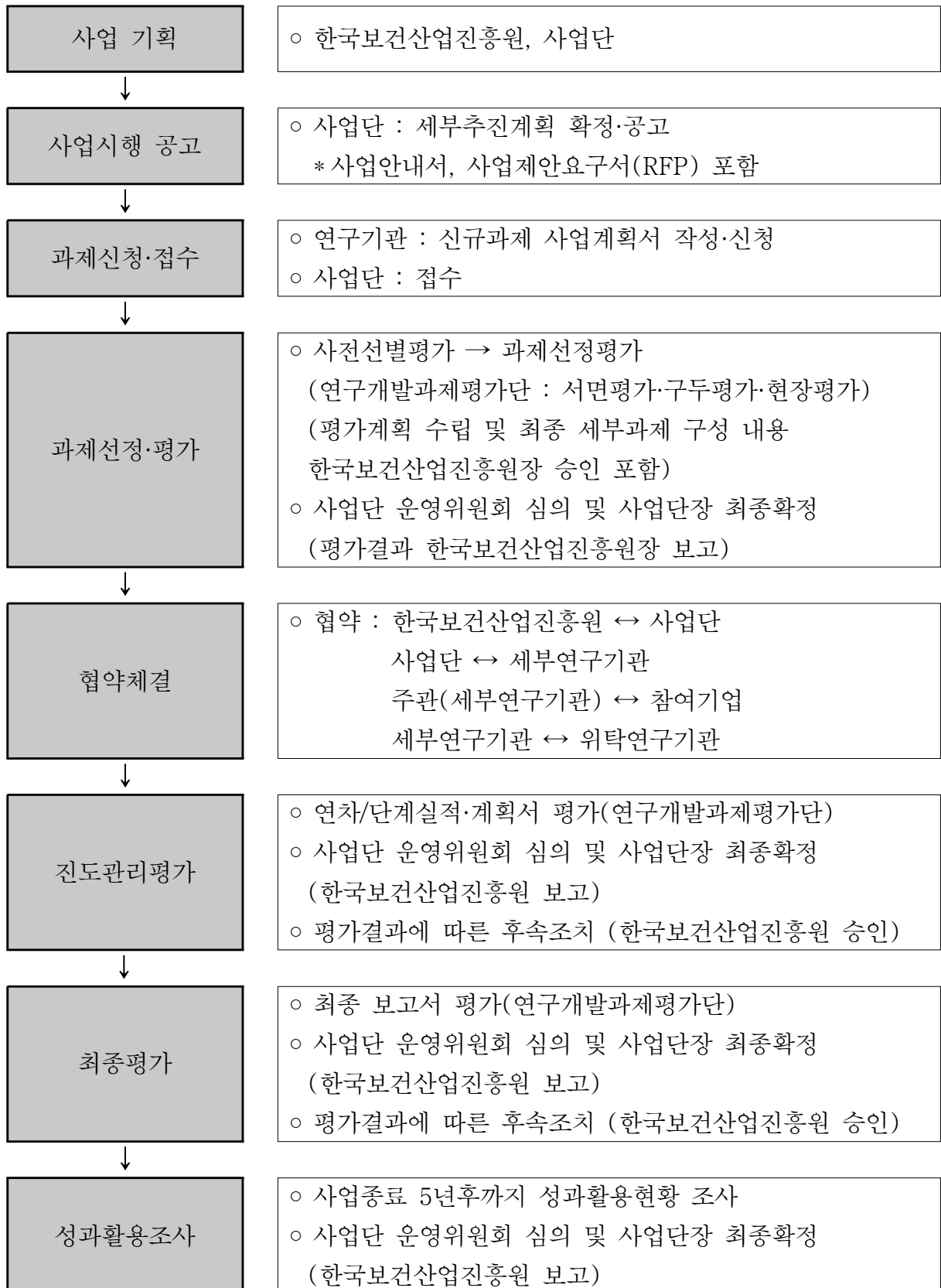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연구기간 내 첫 임상적용이 가능한 중개연구 활성화
 - 기초연구자와 임상외사간 협력연구 수행을 통해 첫 임상적용이 가능한 연구 지원
 - 사업단 내에 기업 및 목표분야의 타 대학·병원·연구소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학제적 연계연구를 지향
- 병원 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 임상외사와 함께 중개연구를 수행할 기초과학연구자(연구전담교수) 채용(최소 4명 이상) 및 연구종료 후 연구전담교수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업단장 및 세부책임자의 진료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학제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병원소속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인력(특히 우수한 Post doc.) 확충 지원

□ 병원과 산학연 간 협력연구 지원

-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활성화, 기관간 인력교류, 실질적 협력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류 등 지원
- 기관의 다른 센터 및 사업단의 공간과 중복되지 않은 병원 내 독립적인 연구공간 지원을 통해 협력연구에 참여하는 외부기관(기업, 타대학 등)의 연구원이 상주할 수 있는 전용 연구공간 확보
- 사업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의 전담사무국 구성 및 운영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단)



6.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개월)
↓	
접수	(2개월)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선규
(Tel : (Tel : 02-2023-8978, E-mail : byuly74@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 변하영
(Tel : 043-713-8443, E-mail : hayoung6@khidi.or.kr)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김한숙 사무관

(전화 : 02-2023-7595, E-mail : arahant@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5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의 자체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백신을 공급하고 백신에 대한 국산화로 국민 의료비를 경감
-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던 신종플루(Pandemic Influenza), AI(조류독감 바이러스),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신종 전염병 및 슈퍼박테리아(EHEC), 원인미상 폐 감염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기술 확보
-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형 백신 수출사업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면역백신의 제품화·개량화 및 신기술백신개발에 중점
 - 고가의 글로벌 백신에 대해 국산화 가능한 면역백신의 제품화·개량화 분야 지원
 -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성, 생산방법, adjuvant 등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백신개발 분야 지원
- 국가적 감염병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R&D 역량 강화 및 대유행 발생시 유연하고 탄력적인 R&D 추진체계 구축
 - 기술개발의 시급성(치사율, 감염률, 백신 또는 치료제 등 대응수단 유무, 사회경제적 비용유발 정도 등을 고려)이 높은 감염병부터 순차적 연구개발 추진
 - 주요 감염병에 대해 감시·역학, 임상·정책, 기초·기전, 진단기술, 치료제, 백신, 인프라의 7대 핵심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기술개발 추진
- 지원분야
 -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난치성결핵 등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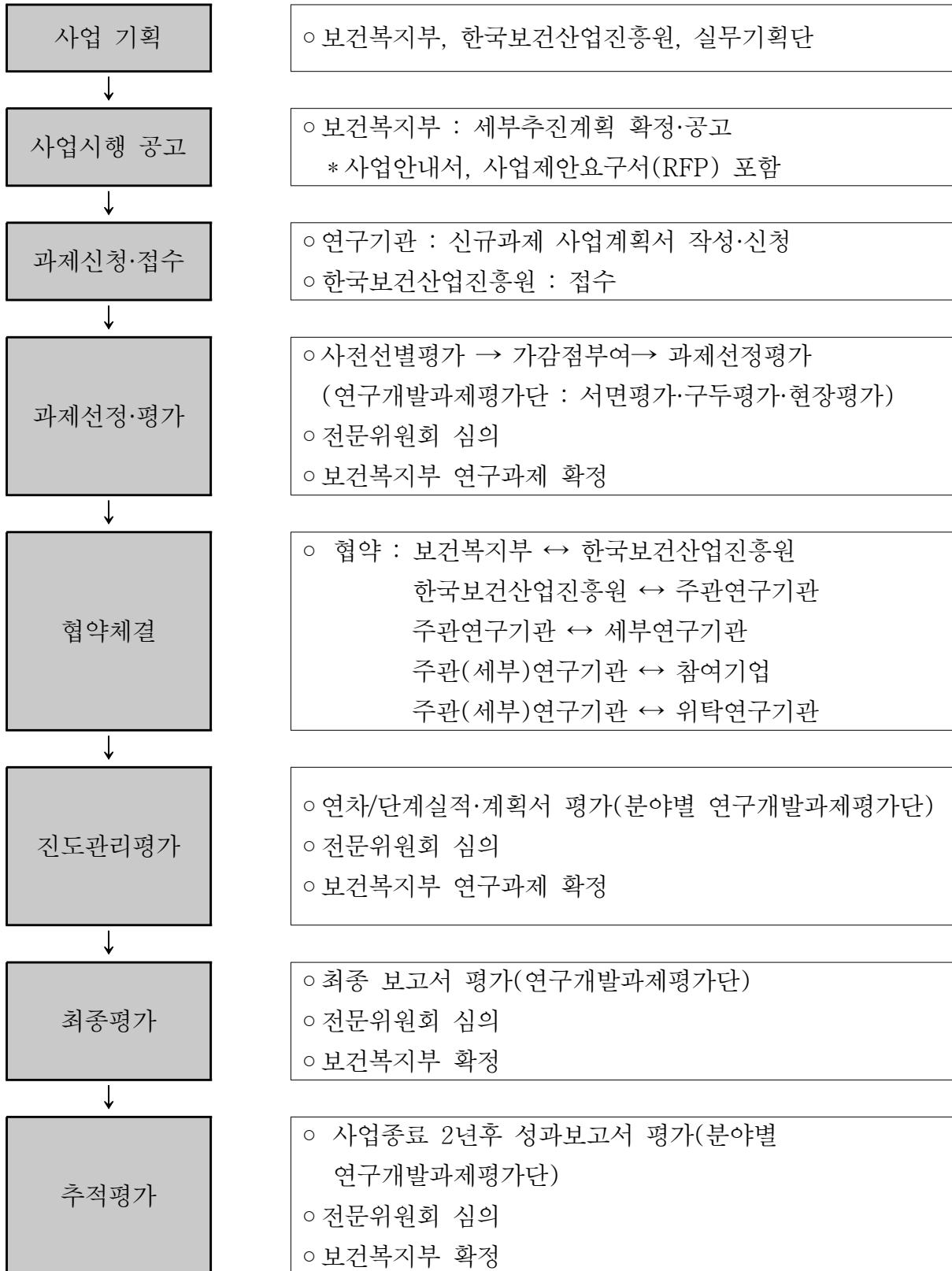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면역백신 개발: 접종이 용이하고 안전하여 쉽게 대규모로 백신을 수송하고 접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전달기술 및 백신의 안정성·보관기간 연장 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

- 신기술백신개발을 위한 1단계(후보물질도출,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비임상 준비 및 시제품 생산) 및 2단계(비임상 완료 및 임상 1상 진입(IND 승인)) 지원
-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3+2) 이내 지원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 다제내성균 극복 기술개발: 다제내성균의 출현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 개발
 - 다제내성균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연간 15억원 이내, 5년(3+2년, 2단계) 이내 지원
 - 다제내성균 대응기술 중점연구 :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난치성결핵 극복 기술개발: 효과적인 결핵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핵심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해 질병부담이 높은 결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결핵 조기퇴치에 기여
 - 결핵제어기술연구: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결핵 신속진단 기술개발: 연간 3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항결핵제 개발 1단계(2년 이내) : 연간 300백만원 이내
 - 항결핵제 개발 2단계(3년 이내) : 연간 500백만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신종인플루엔자범부처사업단은 사업단 추진체계에 따름

6.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개월)
↓	
접수	(2개월)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 신종인플루엔자범부처사업단 (관리규정, 운영규정·지침)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문의처〉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한숙
(Tel : 02-2023-7595, E-mail : arahant@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 이지윤
(Tel : 043-713-8445, E-mail : jsjefiw3@khidi.or.kr)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김한숙 사무관

(전화 : 02-2023-7595, E-mail : arahant@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797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고령화,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과학기술 융합화 등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 R&D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줄기세포·재생의료, 신약, 의료정보 등 경쟁우위 선점이 가능한 첨단의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첨단의료기술개발
 -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33,000백만원)
 - 임상유전체 기반기술(보건의료유전체) (11,400백만원)
 - 융복합 보건의료기술 (9,500백만원)
 - 신약개발 지원 (25,873백만원)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 치료기능 줄기세포 특화 기술개발

- 줄기세포자원 확보, 세포·조직분화기술, 이식기술 및 기능회복 등 기존 약물요법·수술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신개념의 세포치료제 개발
- 연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 줄기세포·재생의료 사업의 기획, 성과관리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업무 지원
- 연간 15억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 질환별 중개연구

-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에 대한 질병 지향적이고, 임상적용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입증 및 신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적 근거 창출

- 연간 0.8~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중점기술 중개연구

-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활용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중개연구 지원을 통해 실질적 사업화 성과 창출
- 연간 10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근거창출 임상연구

-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허가용 임상 개발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근거 확보
-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여 상위 임상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용화 촉진을 위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 연간 3~18억원 이내, 2~4년 이내 지원

○ 실용화 컨소시엄

-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성공사례 조기 창출
- 연간 3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임상유전체 기반기술(보건의료유전체)

○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

- 임상적용 가능한 맞춤진단 치료법 5건 이상 개발 및 인간유전체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거점 3개소 이상 육성
-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가 양성, 임상 유전체분석기 개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등 맞춤형의료기술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지원

- '13년도 114억원 지원

□ 융복합 보건의료 기술

○ 보건의료정보

-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여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및 장애인 u-health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연간 3억원, 3년
-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연간 5억원, 3년
- 보건의료정보표준화 : 연간 7억원, 1년

○ 유망보건의료기술

-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중 대규모 사업이거나 이미 중요성을 인정받아 범주화된 사업을 제외한 중소 규모의 기술개발 분야 지원
- 바이오이종장기개발 2단계 사업 추진(3+3, 6년) : 장기부족문제 해결 및 국민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이종장기 이식기술의 임상적용
 - 연간 45억원 3년(1단계), 연간 50억원 3년(2단계)
- 장기이식환자에서 장·단기 생존율 개선을 위한 면역관용 유도 기술 및 첨단 치료법 임상적용
 - 장기이식 치료기술개발 : 연간 5억원 2년(1단계), 연간 10억원 2년(2,3단계)
 - 장기이식 진단기술개발 : 연간 5억원 3년(1단계), 연간 5억원 3년(2단계)
- 나노의학 : 임상수요와 국내 우수 나노바이오 이미징 기초·원천 기술을 접목하여 임상적용을 위한 비임상·임상연구 분야
 - 연간 5억원, 2년

□ 신약개발 지원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 국내외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개량신약 등 개발품목 및 개발단계(비임상·임상 1상, 2상)에 따른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치료효과 규명
- 연간 3~18억원 이내 1~3년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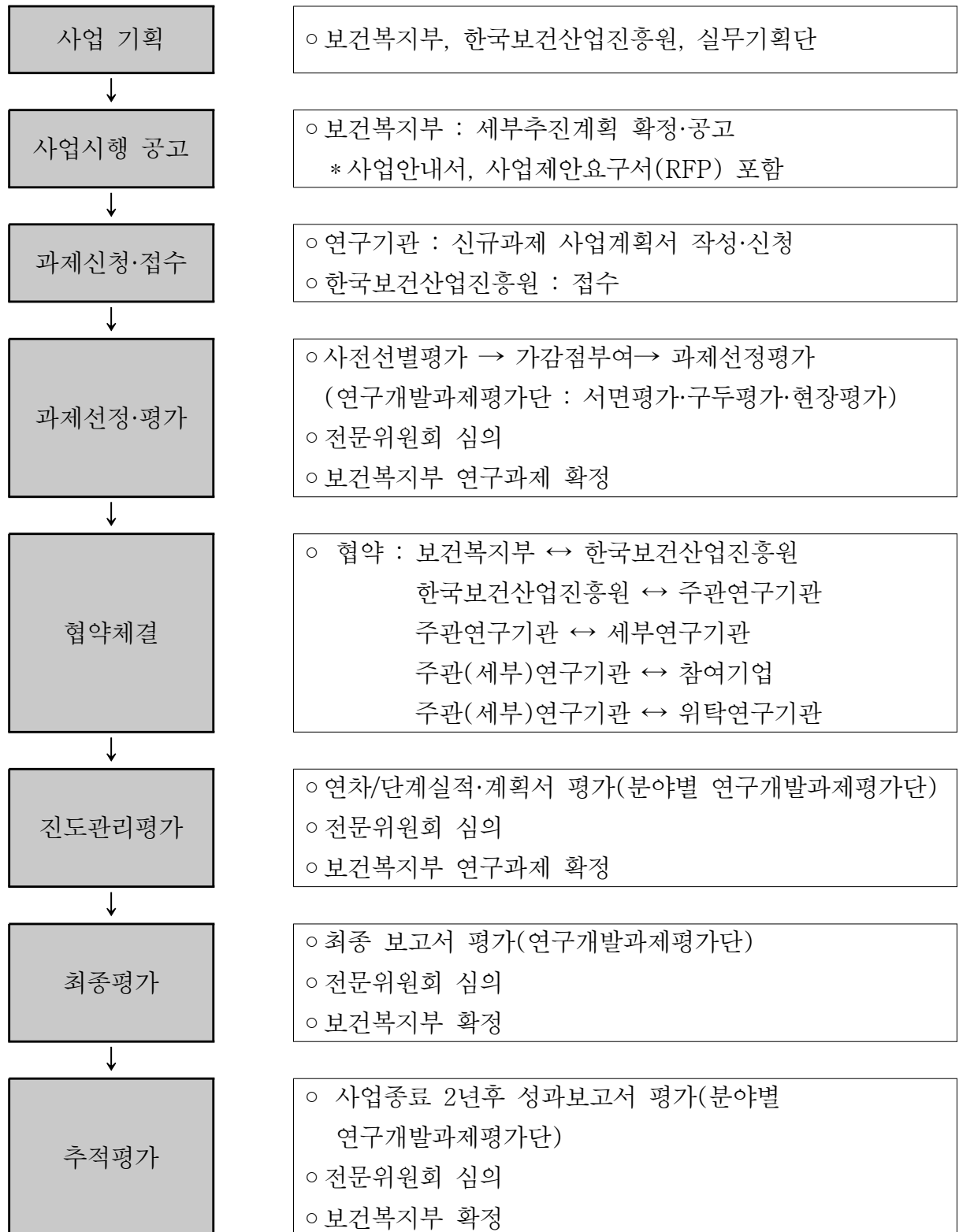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 혁신형제약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활동 지원
- 연간 3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 신약개발기반구축센터

- 국내 제약사 및 신약개발 벤처기업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기술 센터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의 기술적 병목현상 해소
-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개월)
↓	
접수	(2개월)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 차세대맞춤의료유전체사업단(운영규정, 평가지침, 관리규정)

□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문의처〉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한숙
(Tel : 02-2023-7595, E-mail : arahant@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권애경
(Tel : 043-713-8718, E-mail : kwonak@khidi.or.kr)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윤대중 사무관

(전화 : 02-2023-7598, E-mail : ydjung119@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108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억원 (복지부)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9년의 사업기간(2011~2019)에 걸쳐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구축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개발 및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

2. 지원대상분야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의 개별적인 신약개발 제품화 R&D 사업을 초월하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
- 개별 부처의 R&D 사업 성과가 단절 없이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외 신약후보물질 소싱 및 최적인 임상시험기관 활용
- 기존의 획일적 정부 R&D 사업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투자형 프로젝트 관리 추진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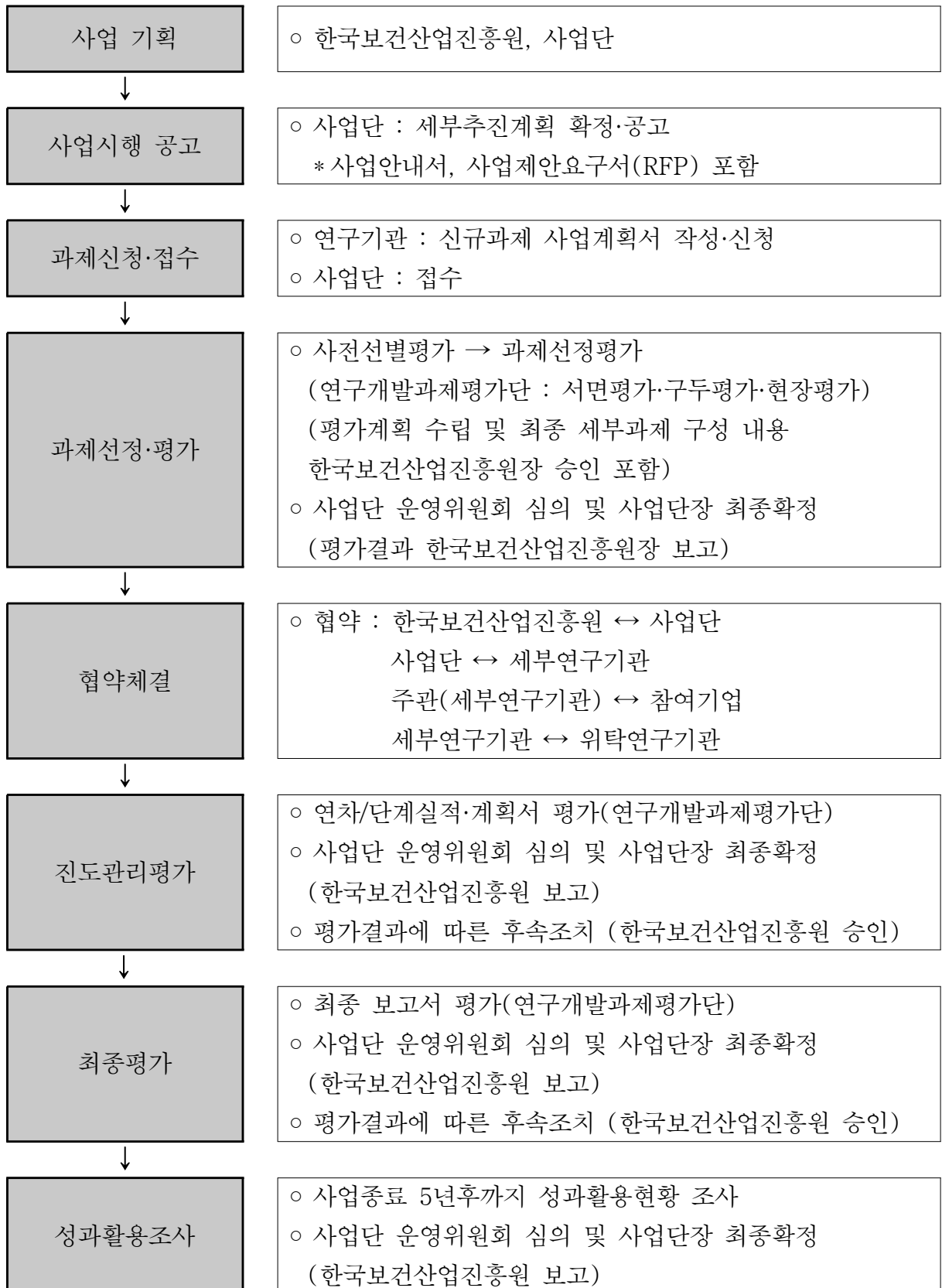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사업기간 : 2011년~ 2019년
- 총사업비 : 총 10,600억원 규모(3개 부처 공동 5,300억원 투자, 민간매칭 50%)
(3개부처 공동 '13년까지 기투자액 : 810억원 투자)
- 사업규모 : 연간 300~750억 규모 투자, 총 200개 규모의 과제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민간 Matching 50%)
- 사업시행주체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 단계별 :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 글로벌 혁신신약 (합성, 바이오, 천연물)
 - ※ 단, 개량 신약,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는 제외.
 - ※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연구 내용은 제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단)



6. 추진일정

구 분 (지원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	수시 과제 접수 : 매 짝수달 4번째 주 월요일~금요일											

※ 수시 과제 접수 : 매 짝수달 4번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6시 까지)

7.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 고
제출공문 1부	과제 제출 기관의 공문 양식을 이용
연구개발계획서 20부	별첨 양식을 이용(홈페이지에서 제공)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버전 20부	별첨 양식을 이용(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단의 보안버전 작성안내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CD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버전 파일 (CD 제출)	-
연구개발사업 참여의사확약서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기관 소개자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제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명된 원본을 사업단에 우편으로 제출
임상시험 관련 주관연구기관장 확약서 1부	임상과제의 경우 제출
임상시험비 내역서 1부	임상과제의 경우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신규대조표	재접수 과제의 경우 제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3호, 2012.2.20)

홈페이지 주소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http://www.kddf.org>)

– 대표전화 : 02-361-3600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윤대중
(Tel : 02-2023-7598, E-mail : ydjung119@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강창구
(Tel : 043-713-8448, E-mail : kchangu@khidi.or.kr)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윤대중 사무관

(전화 : 02-2023-7598, E-mail : ydjung119@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60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1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국가 주도의 항암 신약개발을 위하여 최적의 조직,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확보하여 신약개발의 병목 단계인 임상단계에 투자
- 물질개발 단계를 거친 항암 후보물질의 전임상과 임상 1상, 2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여 항암제 개발 가속화

추진배경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에게 국산 항암신약을 개발·제공하여 국민을 암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필요

- 지난 수십년간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기존 신약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신약개발사업 도입 필요

2. 지원대상분야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 기존에 물질개발 단계를 통해 항암신약 후보물질로 개발되었으나 후속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우수한 후보물질들에 대하여 사업단을 통해 국내 산학연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기탁받아 전임상, 초기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여 국내 신약개발의 병목현상 돌파
- 기존의 조직, 인프라, 운영시스템을 결집시키는 시스템통합적(system integrating) 사업 추진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 사업기간 : 2011년~ 2015년
 - 총사업비 : 총 2,400억원 규모(국고1,200억원, '13년까지 기 투자액 260억원)
 - 사업규모 : 2016년 초까지 초기임상 시험을 통과한 글로벌 항암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을 개발하여 기업체에 기술이전
 - 지원조건 : 정부출연(민간 Matching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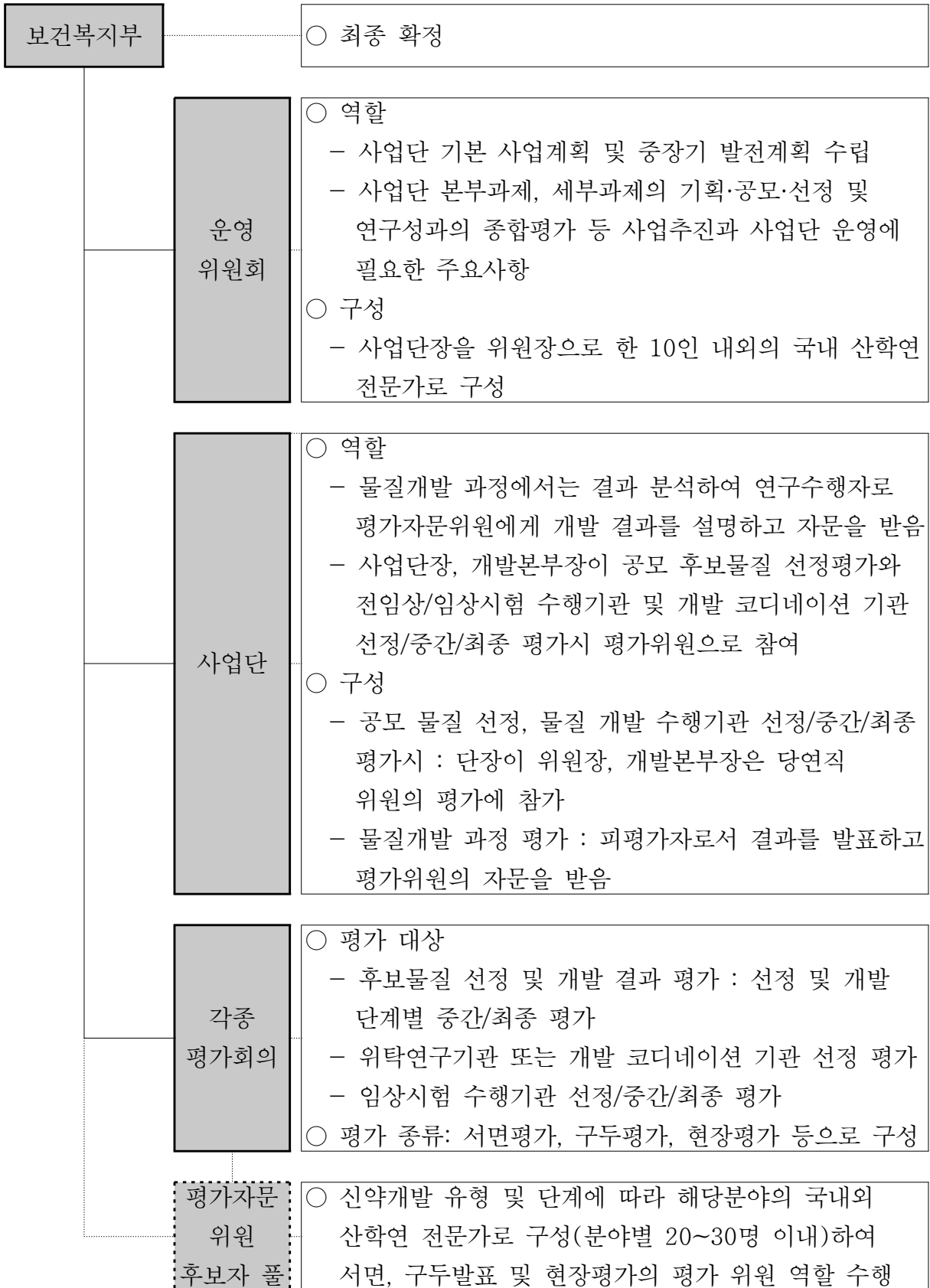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가상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신약 개발 인력 및 자원 등을 결집하여 비임상 및 초기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가상신약개발 조직을 구축
- B&D사업(Bridging & Development) : 물질제공자의 유망후보물질을 선별하여 Bridging & Development 전략으로 기존의 병목현상을 타개하고 사업단 주도의 공동개발을 통해 신약개발 전반의 노하우를 가진 네트워크 기관에 위탁하여 비임상, 초기임상시험 수행을 완료하여 국내외 신약개발 기업에 기술이전

○ 지원내용

- 물질효능검증 및 보완 ('13년 예산, 2,800백만원)
- 비임상시험 ('13년 예산, 3,400백만원)
- 임상시험 ('13년 예산, 4,500백만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단)



※ 후보물질 사업추진절차

구 분	주요 내용
후보물질 공모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보물질을 선별한 후 사전 검증
↓	
후보물질확정 · 개발	검증된 후보물질을 이전 받아(License-in) 사업단 주도로 공동개발 수행
↓	
개발완료 물질 이전	최장 임상2상a까지 후속개발 후 다국적제약사 등 제3자에게 기술이전 (License-out)
↓	
성과 배분	기술이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원소유자와 배분

6. 추진일정

구 분 (지원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보물질공모			공고 (3.14)		평가 (5.8~9)	계약 협상 (6.3~)						
후보물질공모 (수시)	상시후보물질 공모 시 oncoventure@ncc.re.kr로 접수 후 접수확인메일 회신											

7. 제출서류

- 제출서류(후보물질공모)
- 후보물질제안서 1부
- 후보물질관련 특허관련서류(제출 가능시) 각 1부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 운영규정 (2011.11.1)

홈페이지 주소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http://nov.ncc.re.k>)
 - 대표전화 : 031-920-1087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윤대중
(Tel : 02-2023-7598, E-mail : ydjung119@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지원팀 손인섭
(Tel : 043-713-8751, E-mail : swatsis@khidi.or.kr)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정수천 사무관

(전화 : 02-2023-7599, E-mail : jsc5961@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9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의료기기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의 국가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발전

추진계획

- 모방형 제품개발에서 탈피하고 미래 시장 중심의 전략제품 개발 추진을 위해 Top-down 과제 발굴하여 지원
-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은 허가용 임상시험과 임상평가지험 등 2개 분야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유망치료재료 개발
 - 의료기기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 의료기기임상시험
 - 허가용 임상시험
 - KFDA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임상시험
 - 임상평가지험
 - KFDA 허가를 득한 제품의 임상과학적 성능 및 기능 등에 대한 임상평가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급여품목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보조기구(지체보조기구, 청각보조기구, 시각보조기구, 일상생활 및 작업보조기구 등)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부품 및 제품 개발
 - 과제별 목표 : 시제품개발,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래융합의료기기 개발지원으로 미래 주도형 핵심산업 육성·발전
- 과제별 목표: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시제품개발, 연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유망치료재료 개발

-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유망전략품목(치료재료) 국산화
- 과제별 목표: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시제품개발, 연간 5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의료기기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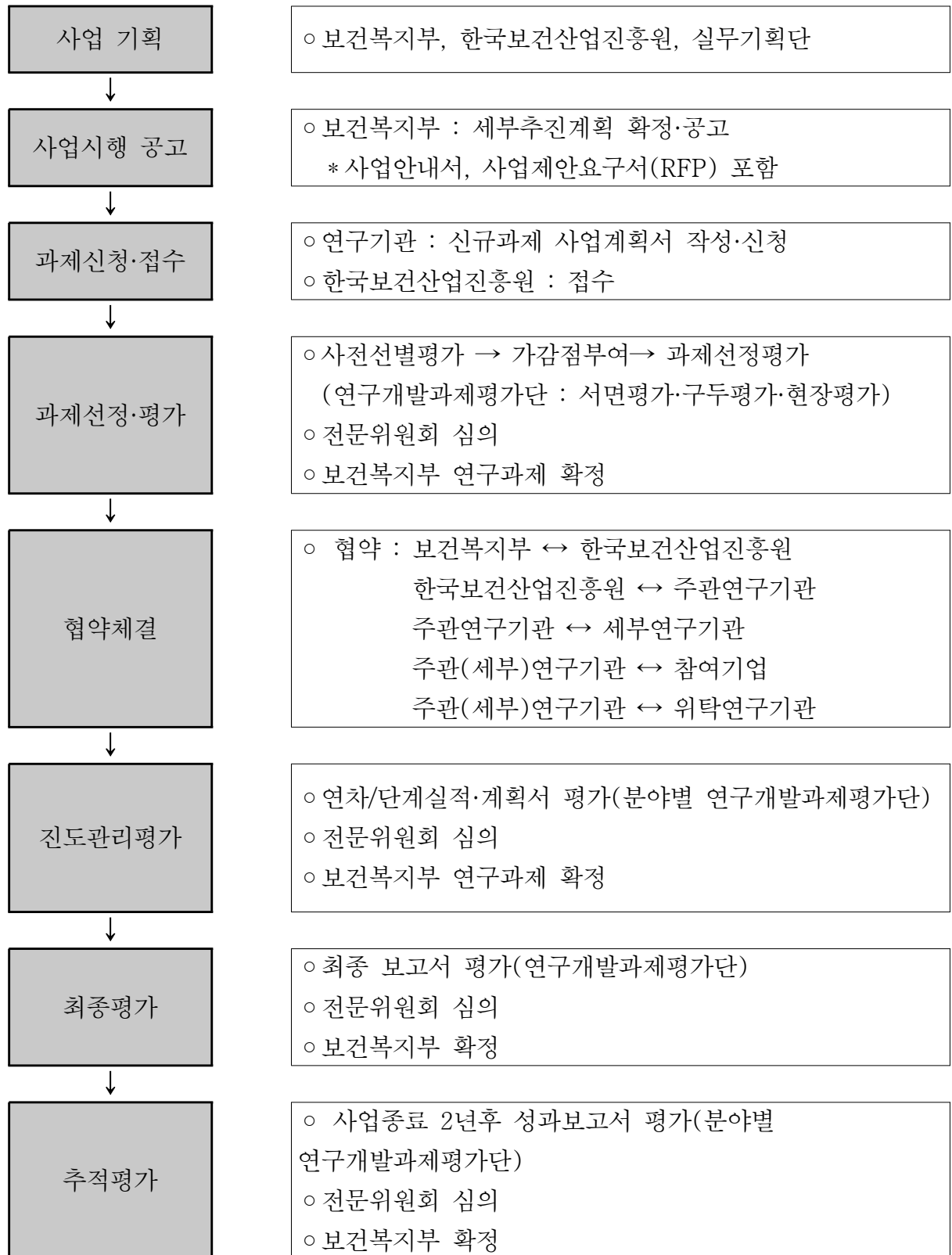
- 국산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 지원

-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 개발,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지험 등 2개 분야로 지원(과제별 목표: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결과 보고,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개월)
↓	
접수	(2개월)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문의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정수천
(Tel : 02-2023-7599, E-mail : jsc5961@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기반구축단 박정원
(Tel : 043-719-8230, E-mail : garden85@khidi.or.kr)

글로벌화장품신소재 ·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박일훈 사무관

(전화 : 02-2023-7672, E-mail : ilhoon@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2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신소재, 융합기반기술, 화장용품 등을 지원하여 선진국 수준 대비 90%이상('07년 67%) 기술수준으로 격상
 - 화장품 산업이 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소재와 융복합 기술 등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 내수 위주의 화장품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산업화에 필요한 신소재, 융합기반기술, 미래유망 화장품 및 화장용품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
 - 글로벌 신소재 연구개발
 - 감성품질, 기능성, 환경친화적, 생체친화적, 수입대체형, 헤어용, 천연한방 등 신소재
 - 융합기반기술 연구개발
 - 뉴트리코스메틱의 이론적 근거확립
 - 신제형 시스템 기술 개발
 - 물성 안정화·흡수화 기술 개발
 - 녹색융합 피부분석 및 평가 기술개발
 - 새로운 화장품 평가 시스템 개발
 - 기타 화장품 개발의 기반이 되는 융복합기술개발
 - 미래유망화장품 연구개발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에 대한 종합지원
 - 화장용품 연구개발
 - 첨단 포장·용기 개발
 - 용기 및 용품 디자인 개발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글로벌 신소재 연구개발지원

- 타깃 신소재 기초 및 응용연구단계 완료, 글로벌 수준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분야별 신소재 개발 및 개발된 신소재 활용 응용제품 제품화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4년(2+2년) 이내 지원

□ 융합기반기술연구개발지원-뉴트리코스메틱 분야

- 뉴트리코스메틱의 섭취에 의한 동물 및 인체에서의 효능 규명 및 차별화된 생체지표 및 작용 기전 규명
 - 과제당 연간 2~3억원 이내, 3년(1+2년) 이내 지원

□ 융합기반기술연구개발지원 - 일반분야

- 관련 분야 융합기반기술 기초 및 응용연구 완료 및 응용기술개발 착수, 평가기술 분야, 분석기술분야, 제형기술분야 등에서 글로벌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융합기반기술을 구축하고, 개발된 융합기반기술 실용화 연구 및 타 분야 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4년(2+2년) 이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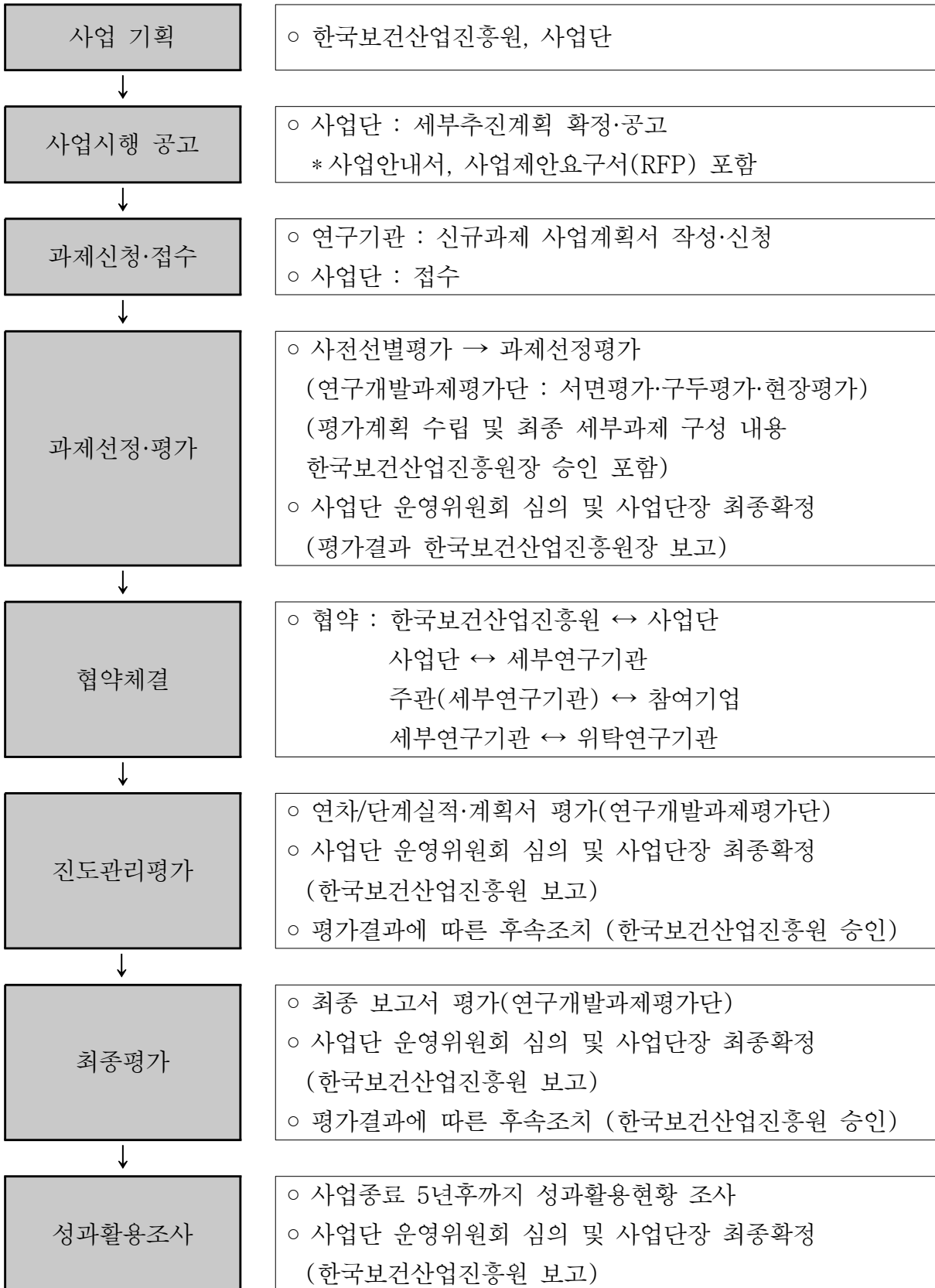
□ 미래유망화장품연구개발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유망화장품개발 및 제품화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4년(2+2년) 이내 지원

□ 화장품용품연구개발지원

- 글로벌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한 용기, 용품 개발기술 확립 및 제품화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구 분 (지원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글로벌화장품신소재 · 신기술연구개발지원					공고 (5.29)						연구 개시 (11.1)	

7. 제출서류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관리규정, 운영규정, 평가지침)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http://www.kcii.re.kr>)
 - 대표전화 : 031)372-1325

〈문의처〉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박일훈
(Tel : 02-2023-7672, E-mail : ilhoon@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기반구축단 성선진
(Tel : 043-713-8752, E-mail : shouter0@khidi.or.kr)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변루나 사무관

(전화 : 02-2023-8445, E-mail : lnbyon@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37백만원

1.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능동적 대응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친화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고령자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연구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직접적 혜택으로 환원
 - 핵심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친화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

-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의료기관 포함), 연구기관 모두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장려

지원분야

- 고령자의 건강증진,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고령친화 용품 및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 고령친화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기술 및 국내외 첨단 기술과 결합한 융복합(BT, IT, NT) 기술 개발
 - 고령친화 제품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시제품 개발 및 초기 유효성 평가, 지식재산권 확보, 기존 제품/기술 대비 과학적 우수성 및 실생활 적용 가능성 검증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연간 최대 250백만원 이내, 총 3년 이내 지원
 - 단 1차년도에의 경우 연구기간은 11개월, 연구비는 238백만원 이내로 산정

지원 분야	지원내용
고령친화 용품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용품
고령친화 식품 (건강기능식품)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 유지 및 인체 기능 유지를 위해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특기사항

- 과제 종료 시,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제품화 전략 및 보급·확산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 기업이 참여할 경우 참여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개월)
↓	
접수	(2개월)
↓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1444호, 2012.11.24)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문 의 처〉—

- 정 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고령사회정책과 변루나
Tel : 02-2023-8445, E-mail : lnbyon@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기반구축단 지경수
(Tel : 043-713-8428, E-mail : ksjee@khidi.or.kr)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윤대중 사무관

(전화 : 02-2023-7598, E-mail : ydjung119@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366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연구 지원

2. 지원대상분야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지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지원

- 의료기기인프라 지원
- 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임상연구인프라 조성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역량을 갖추기 위해 '04년부터 지원해오던 지역임상시험센터(9개소)를 통합하여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T) 지원
- 지역임상시험센터, 글로벌선도센터,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임상시험핵심기술 개발 지원으로 구성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 세계적 수준의 근거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지원하였던 임상연구센터 11개소a),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과제를 통합하여 '10년부터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으로 추진
-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효과 및 효능 규명을 위한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과제 지원
- 임상연구(지원)센터,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 등을 지원

○ 의료기기 인프라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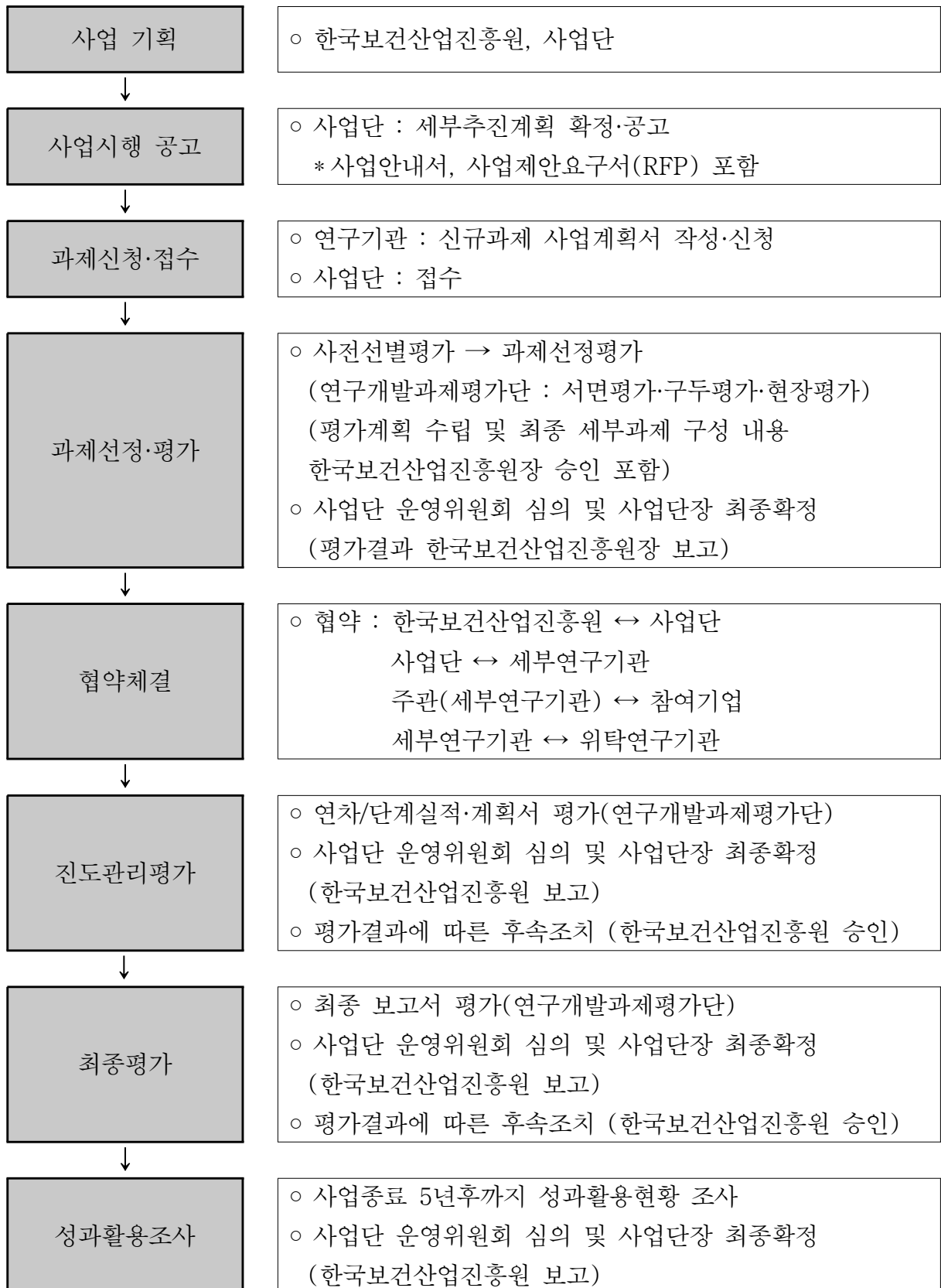
-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요소를 분석, 평가하여 신속히 시제품 제작 기반을 구축하고,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산업계 연계 기반(2개소) 구축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 및 선진국 수준의 인력, 기술, 인프라 확보를 통한 다국가 임상시험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6개소) 구축

○ 질환유효성평가기반구축

- 국내외 의학/질병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학-연구-산업체에서 도출된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를 촉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사업 지원
- 연구결과물의 유효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병원 중심의 센터 4개소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단)



6.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
연차평가 실시 (3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4월)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운영규정, 평가지침, 관리규정)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운영규정, 관리규정, 운영지침)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윤대중
(Tel : 02-2023-7598, E-mail : ydjung119@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지원팀 유주희
(Tel : 043-713-8384, E-mail : yjh0207@khidi.or.kr)

보건의료서비스 R&D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김한숙 사무관

(전화 : 02-2023-7595, E-mail : arahant@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36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미정

1.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융합서비스의 발굴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현 연구 지원
- 정의 : 새로운 혁신적인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개발, 서비스 전달체계개선, 의료안전망서비스 확립을 목적으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기술, 인간,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
- 사업필요성
 - 보건의료서비스는 시장수요 증대, 고령화 등으로 시장 성장세 및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빠르고, 향후 추가 창출 잠재력도 높은 고부가가치 분야

- 정부의 “서비스 R&D” 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그간 투자가 전무했던
보건의료서비스 R&D 투자 필요

2. 지원대상분야

□ 보건의료서비스 R&D

○ 전략과제

- 공감·체감·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지원

○ 연구자 주도형 과제

- 융합서비스 발굴과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과제 연구지원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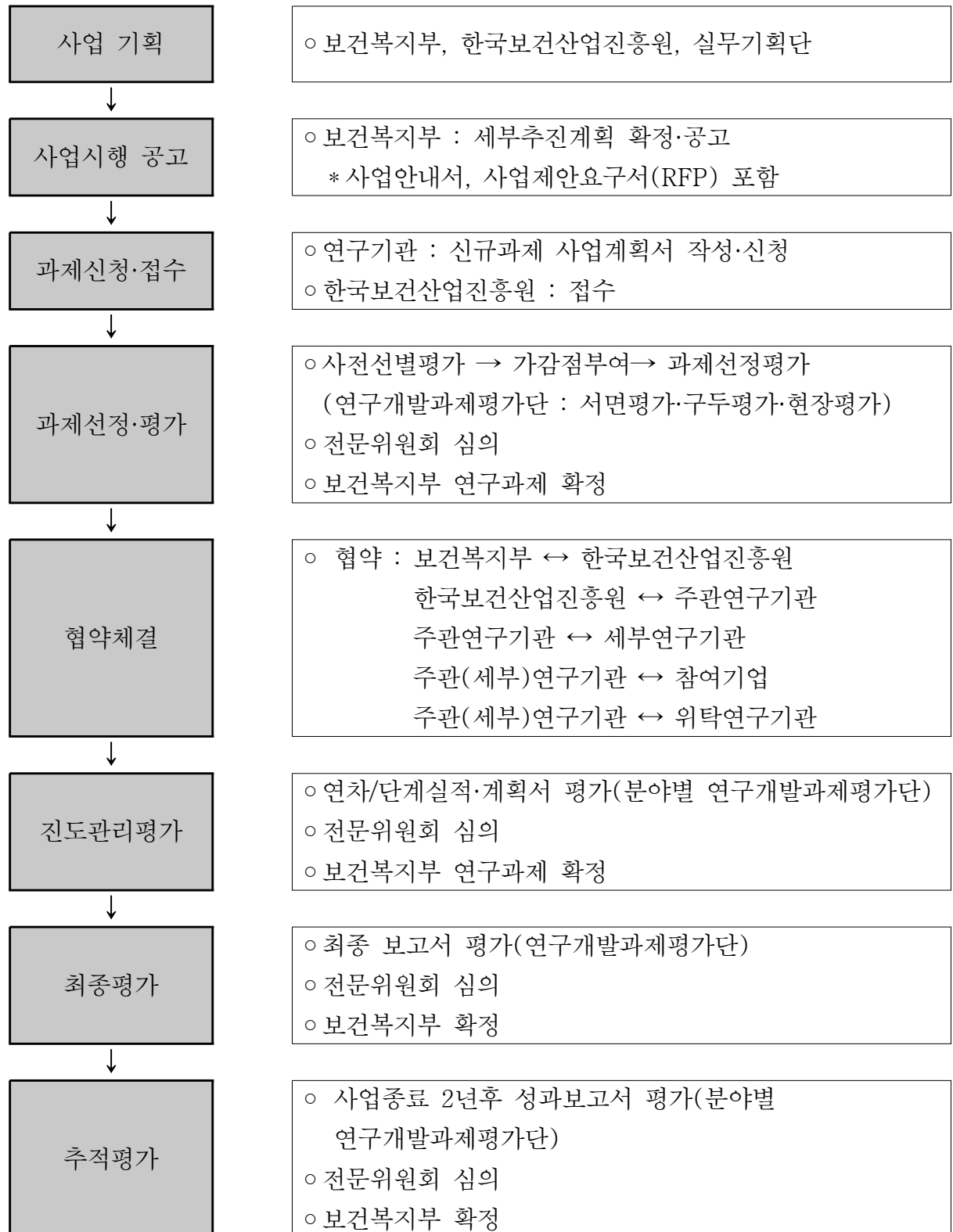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보건의료서비스 R&D
 - 전략과제(Top-down)
 - 공감·체감·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지원(150백만원 또는 200백만원 이내, 2년 또는 3년 이내 지원)
 - 연구자 주도형 과제(Bottom-up)
 - 융합서비스 발굴과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과제 연구지원(200백만원 이내, 2년 또는 3년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구 분 (지원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건의료서비스 R&D		공고 (2.28)				연구 개시 (6.1)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한숙
(Tel : 02-2023-7595, E-mail : arahant@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기반구축단 정미경
(Tel : 043-713-8264, E-mail : oiny2000@khidi.or.kr)

한의학선도기술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	강재중 사무관

(전화 : 02-2023-7475 , E-mail : kangjj@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기타 등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2개월 ~ 84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9백만원

1. 사업개요

개요

사업목적

-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학 경쟁력 강화
- 한방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한의학선도기술개발사업

한약제제·한방의료기기·한방화장품 개발

-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 한·양방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
- 한의씨앗연구

3.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법률 제11713호, 2013.3.23)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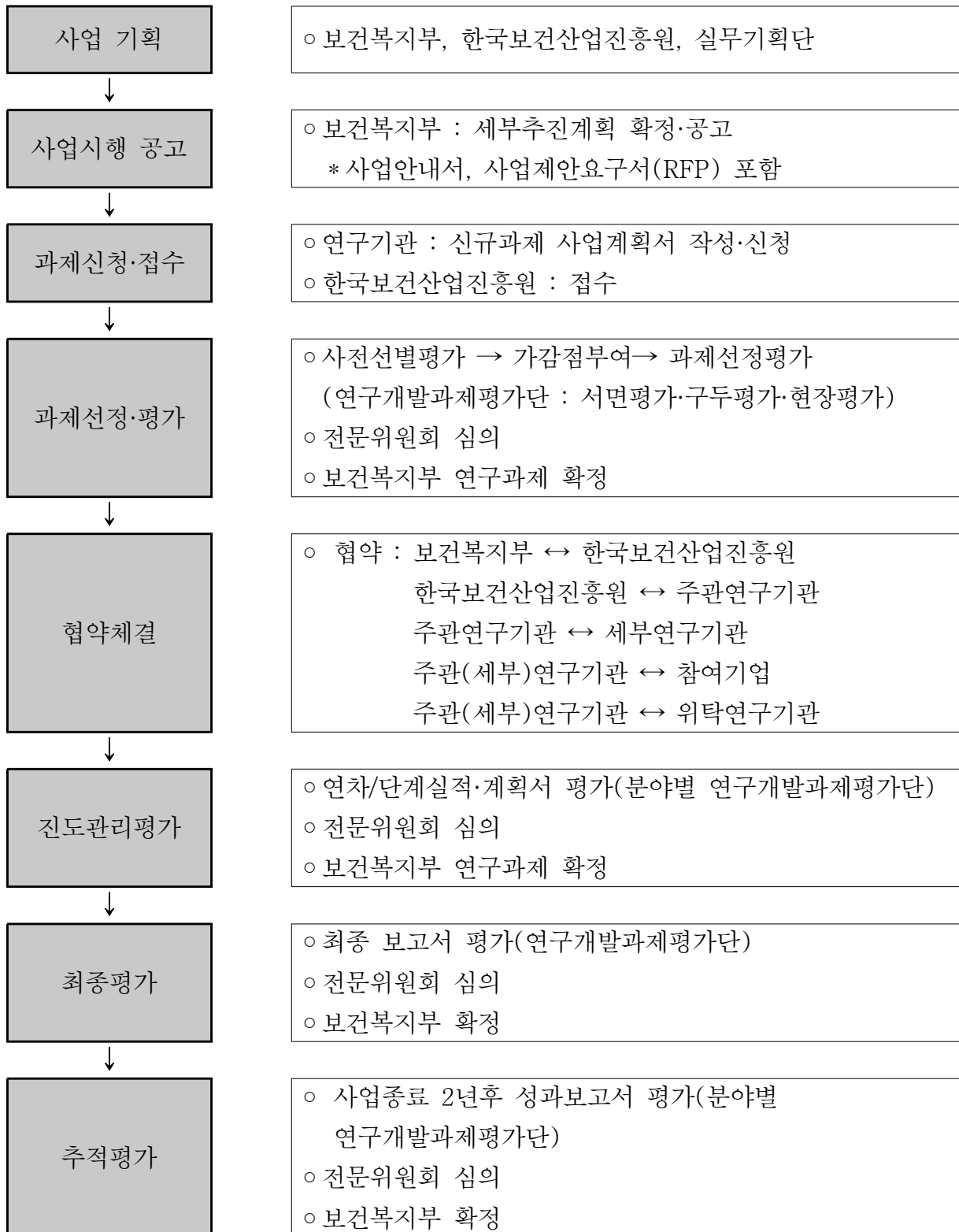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한약제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 전통지식에 기반하고 한의약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신약 개발 및 상품화 - 비임상 :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1상·2상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3상 : 연간 4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한방의료기기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 기술개발 : 연간 0.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의료기기개발, 임상시험 :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화된 한약제제의 임상근거 창출 - 1단계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2단계 연간 10억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한의씨앗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 및 예방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지원 - 연간 3천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한·양방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방 치료기술을 병행하여 난치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치료기술개발 지원 - 탐색, 비임상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임상 : 연간 6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임상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임상인프라 지원 ○ 연간 10억원 이내, 5(3+2)년 이내 지원
한방화장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원료를 활용한 한방화장품 개발 지원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구 분(지원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약제제개발 한방의료기기개발 한약근거창출임상연구 한약의씨앗 한·양방협력연구 한방화장품개발	공고 (1.28)			평가	연구 개시 (5.15)							
한약임상인프라 구축지원	공고 (1.28)			평가		연구 개시 (6.1)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직인되어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법률 제11713호, 2013.3.23)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한의약육성법 (법률 제11524호, 2012.10.22)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홈페이지 주소

-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문 의 처〉—

- 정 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학산업과 강재중
(Tel : 02-2023-7475, E-mail : kangjj@korea.kr)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정 희
(Tel : 043-713-8468, E-mail : junghee@khidi.or.kr)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재형 사무관

(전화 : 02-2023-7556, E-mail : sunnysjh99@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대학, 연구소, 기업, 기타
(3) 지원목적	연구개발, 산업기술개발, 지역혁신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0개월~60개월 이내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름)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147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13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 수준의 암 예방연구 및 효과적인 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 학·연·산·의료계 우수 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중개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암 예방·진단·치료 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

중점 추진방향

- 중개연구 및 임상연계 중요성 증대에 따른 암 중개융합연구 및 실용화 연구 중점 추진

-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형 연구(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지원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구현을 위한 암 예방·관리·서비스 연구 및 공익적 목적을 강화한 다기관 암 임상연구 지원
- 암 연구의 미충족 영역(unmet needs) 도출 및 전략적 기획을 통한 Top-down R&D 추진
- 암 연구개발의 원활한 네트워킹 구축 및 분야간 응용연구 강화를 위한 협력연구 활성화 선두
- 효율적인 국가 암 연구수행 및 암 연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암정보포럼」 운영

2. 지원대상분야

□ 암 중개융합연구

- 암 기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예방·진단·치료기술의 실용화와 임상적용을 위한 응용연구과제 지원

□ 다기관 암 임상연구

- 다기관 공동 임상연구를 통해 국내 주요 암의 진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암 진료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진료비용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임상연구과제 지원

□ 암 예방·관리·서비스 연구

- 국가 암 예방·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증상 완화 및 관리를 위한 중재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암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 지원

지역암센터 연구사업 지원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암 연구개발 및 지역암센터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암센터 연구과제 지원

기획·정책연구

- 효율적인 국가 암연구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및 암관리 정책 수립·시행의 근거 개발을 위한 기획·정책연구과제 지원

3. 신청자격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정책연구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 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암 중개융합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 (단독) 연간 0.6억원 이내, 3년 이내
(협동)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모두 가능하며, 협동과제의 경우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되, 기초의과학자(Ph.D)와 임상의과학자(MD)의 연계(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필수 조건임

○ 다기관 암 임상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2억원 이내, 5년 이내(2단계, 2년+3년)
- 지원대상 :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3개 이상의 기관 참여가 필수 조건임

○ 암 예방·관리·서비스 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 (단독) 연간 0.6억원 이내, 3년 이내
(협동)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산·학·연 모두 가능하며, 협동과제의 경우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야 함

○ 지역암센터 연구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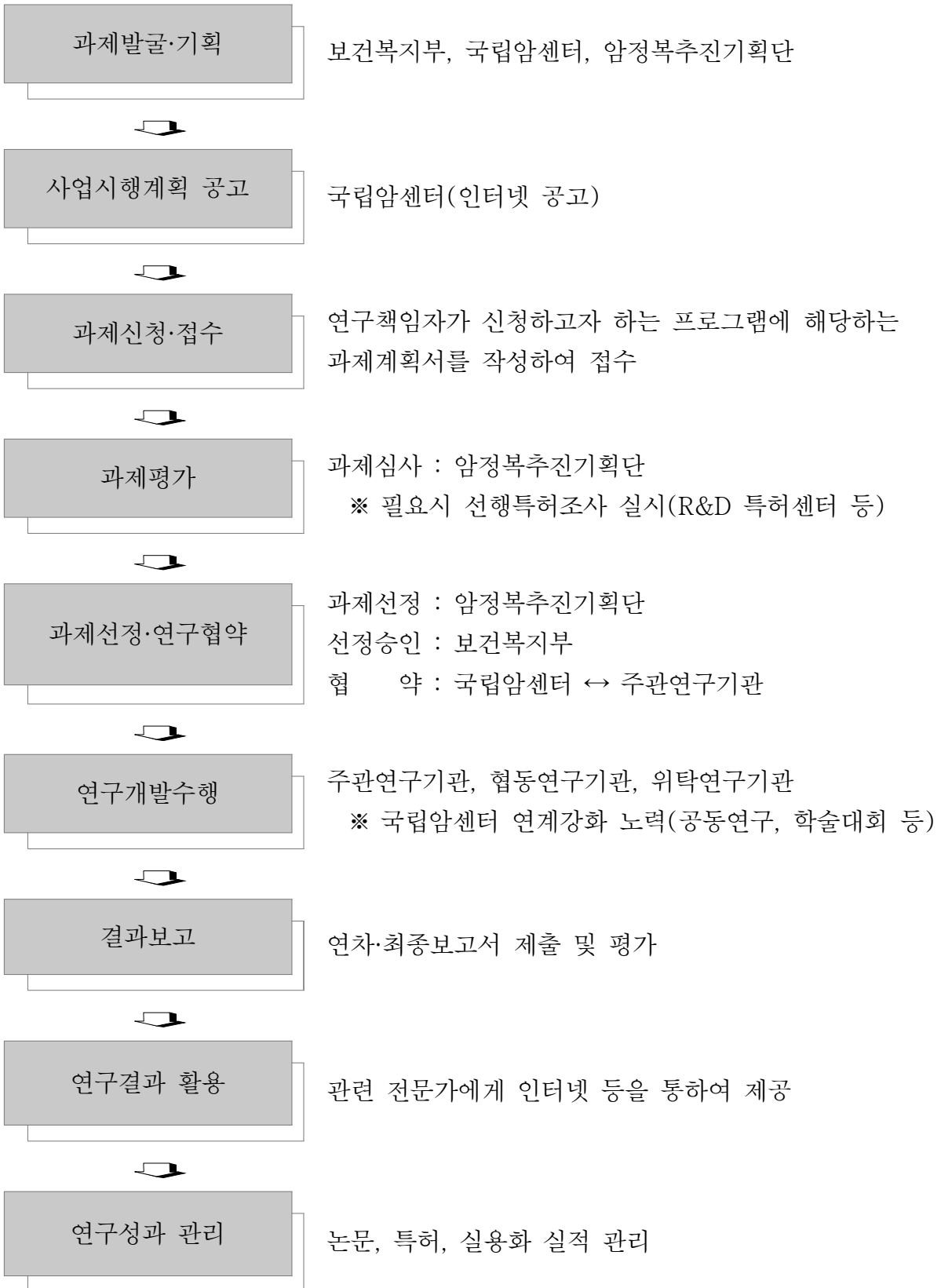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3억원 이내, 5년 이내(2단계, 2년+3년)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4개 이내의 세부과제로 구성하되, 기초의과학자(Ph.D)와 임상의과학자(MD)의 연계(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필수 조건임

□ 지원조건

- 신규과제 : 「2013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에 안내된 프로그램별 연구비 배분(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며, 프로그램별 경쟁률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 계속과제 :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과제를 ‘계속지원’하며, 지원 ‘조기중단’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미배정 연구비가 발생할 경우 신규과제 예산으로 활용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 2013. 1월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13. 2월 과제접수
- 2013. 3월 서면평가 실시
- 2013. 4월 초 구두발표/패널토론 평가 실시
- 2013. 4월 말 최종선정결과 통보
- 2013. 5월 협약 및 연구개시

7.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공문(일괄 제출)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에 전산등록하여 제출

8. 관련자료

- 2013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http://rnd.ncc.re.kr>)

〈문 의 처〉

- 정 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재형 사무관
(Tel : 02-2023-7556, E-mail : sunnysjh99@korea.kr)
- 전문기관 :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 사무국 담당자 김민정
(Tel : 031-920-1081, E-mail : classy82@ncc.re.kr)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R&D)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단	손성구

(전화 : 02-2023-7913 , E-mail : gamtree@gmail.com)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보건의료
(2)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개발연구
(5) 연구개발기간	1~3년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40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3억원

1. 사업개요

개요

- 사업목적 :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2. 지원대상분야

주제지정분야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험동물센터 및 임상시험신약생산 센터를 활용한 공동연구개발과제
 - 기반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 공동연구개발과제

- ① 의료제품 사업화 과정의 공백기술지원에 필요한 단지 내 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반기술 구축 공동연구
- ②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단지 내 센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 자유주제분야

- 주관연구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신약/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중 2개 센터 이상과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과제

□ 기획연구분야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 유망한 연구성과(후보 제품·물질 포함)의 사업화 껍을 넘는 데 필요한 연구 자금과 연구개발인프라(연구인력·기술·장비·컨설팅 등)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방향 및 체계 수립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의료 연구개발 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약회사
 -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① 단지 내 입주 또는 입주확정 기업 연구소, ② 인근대학 순으로 연구개발 사업 공모 시 가산점 부여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분야별 기간 및 예산

구분	사업분야	총 수행기간	총 연구비 (백만원)	해당연도 지원예산 (백만원)	
대구 경북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	주제 지정 분야	동물유래 바이오리소스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지원	1~3년	1,290 이내	430 이내
		뇌질환동물모델을 이용한 신약 유효성 평가를 위한 첨단생체영상분석기법 및 활용방법 개발	1~3년	660 이내	220 이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신약후보 물질 유효성 평가용 생체영상 프로브 개발	1~2년	200 이내	100 이내
		Quality, Process Development를 통한 임상시험용 의약품(합성) 제조품질관리 시스템 연구	1~3년	1,650이내	550 이내
	자유 주제 분야	신약/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 공동연구	1~3년	1,500 이내	500 이내
오송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	주제 지정 과제	비임상 단계의 평가기술 최적화를 통한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	1~3년	600 이내	200 이내
		타깃 맞춤형 모델동물개발을 활용한 의료제품개발 지원	1~3년	1500 이내	450 이내
		의료제품개발을 위한 이미징 평가기술 개발	1~2년	200 이내	100 이내
		Quality, Process Development를 통한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시스템 연구	1~3년	1,650 이내	550 이내
	자유 주제 분야	신약/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개선 공동연구	1~3년	1500 이내	500 이내
공통	연구 기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지원사업 기획 연구	6개월	400 이내	400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단계>	<수행주체>	<수행내용>
Step1	연구 기획	연구기획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획 전문 컨설팅 기관 선정 · 첩보단지 및 각 센터의 기능 파악 및 수요조사 등 자료 취합 분석 · 중·장기 및 단기 연구개발지원사업 계획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략기획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도 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기획 수립
Step2	사업 공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략기획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획에 기초한 공고문 작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상 사업공고
Step3	선정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 절차에 따라 평가수행
Step4	협약 체결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략기획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외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지원비 지급에 대한 협약 체결
Step5	연구 수행	주관 연구기관	
Step6	중간 및 최종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관리 규정 및 지침, 절차에 따라 평가수행
Step7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관리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요청 · 관리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속조치 수행
Step8	연구비 정산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략기획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라 적정 사용 검토

6. 추진일정

월	추진내용
○ 2013. 5. 13 (월)	사업공고(전산입력개시 5/13 (월))
○ 2013. 6. 12 (수)	신규과제 전산입력 마감
○ 2013. 6. 14 (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3. 6. 말	신규과제 서면평가 실시
○ 2013. 7. 초	신규과제 서면평가 후 과제검토
○ 2013. 7. 중	신규과제 구두평가 실시
○ 2013. 7. 중	관리운영위원회 개최
○ 2013. 7. 말	신규과제 예비선정 공고
○ 2013. 7. 말	신규과제 협약 체결 통보
○ 2013. 8. 1 (목)	신규과제 연구개시

7. 제출서류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 날인 후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연구계획서에는 과제 수행 시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 수행 센터 간 역할분담, 연구참여 비율,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 2012.10.3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침 2012.5.30) 등

— <문 의 처> —

- 정 부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단 손성구 사무관
(Tel : 02-2023-7913, E-mail : urisory99@korea.kr)
- 전문기관 :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 권종구
(Tel : 053-790-5116, E-mail : jkwon@dgmif.re.kr)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 심재운
(Tel : 043-249-2227, E-mail : simppong@kbio.kr)